◉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2-104호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지하고자 하나,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08일

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
행정처분 통지 공고

1. 대상업체

업종 (인허가번호)	업체명	대표자	소재지
수입식품등 수입·판매업 (제20080098255호)	㈜알비케이뉴트라슈티컬코리아	노*균	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60길 23-13(지102호)

2. 처분사항

○ **시정명령(2023. 1. 7일자)**

3. 처분사유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에 의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, 「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」제8조제1항에 의거 등록자는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정보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운영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전자기록으로 연계하여야 하며, 품목별 정보 연계 시기는 해당 제품의 입·출고 후 2일 이내(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임에도 불구하고,

- 상기 당사자는 2022. 1. 1. ~ 2022. 9. 6. 기간 동안 이력추적관리 대상제품 트루블루 프로폴리스 600CT(식품유형: 건강기능식품) 등 4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일부 입고·출고정보를 1일 이상, 89일 미만 초과하여 시스템에 연계함으로써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령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

○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」제38조제1항 관련 [별표 11]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2호 다목 및 제3호

5. 고지내용

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

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[서면 또는 온라인(simpan.go.kr)]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※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, 온라인 행정심판(www.simpan.go.kr)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문의처: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(Tel: 02-2640-1316)